##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10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 강유정·김영배·김준혁

위성곤 • 어기구 • 김한규

임광현 · 임오경 · 백승아

이훈기 · 황정아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을 '적국'으로 한정 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이 '적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방국·非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
·전달·중계하는 간첩행위 뿐만 아니라 적국·외국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그들로 지시받은 자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목적으로 사실
을 조작·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우리국민들에 유포하는 행위를 하거
나 우리의 국내외 정책관련 사항이나 외교적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
여 간섭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안보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안보위협 행위를 간첩 뿐만 아니라 외국 등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8조, 제98조의2 신설, 제102조 및 제104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問 諜"을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누설·전달·중개(이하 "간첩"이라 한 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8조(적국에 의한 안보위협)

- ③ 적국 소속이거나 적국으로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적국 소속이거나 적국으로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국내외 정책과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제3항의 형과 같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8조의2(외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 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이하 "외국등"으로 한다)에 소속되거나 외국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

- ·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외국등에 소속되거나 외국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국내외 정책과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제2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준적국)

-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동맹국)
  -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8條(間諜) ① 敵國을 爲하여	제98조(적국에 의한 안보위협) ①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	
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u>수집 • 탐지 • 누설 • 전달 • 중개</u>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u>(이하 "간첩"이라 한다)</u>
②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	<삭 제>
<u></u> 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u>&lt;신 설&gt;</u>	③ 적국 소속이거나 적국으로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를 받고 정보를 왜곡·조작하
	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
	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u>&lt;신 설&gt;</u>	④ 적국 소속이거나 적국으로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를 받고 국내외 정책과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부당
	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제3
	항의 형과 같다 <u>.</u>
<u>&lt;신 설&gt;</u>	제98조의2(외국 등에 의한 안보
	위협) ① 외국 또는 외국인 단

第102條(準敵國)(생 략)

<신 설>

第104條(同盟國) (생 략)

<신 설>

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 을 방조한 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②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이 하 "외국등"으로 한다)에 소속 되거나 외국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 고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안보 를 위태롭게 한 자는 5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외국등에 소속되거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상 응하는 대가를 받고 국내외 정 책과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한 자는 제2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 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4조(동맹국)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 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